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에 대한 「군용기인증법」 적용 등〉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8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89호) .....                                | 1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에 대한 「군용기인증법」<br>적용(안 제2조·제3조) ..... | 3  |
| 2.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제한형식증명 도입(안 제20조) .....                           | 14 |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2218889)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1.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에 대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적용(안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인증법」 이하 함)」을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 4. -----<br>-----<br>-----<br>-----<br>-----<br>-----<br>-----<br>-----<br>-----. |
|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 가. -----<br>-----구조(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나. -----예방(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

| 현행                                                                                                                                                                                                                                              | 개정안                                                                                                                                                                                                                                                                                                                                           |
|-------------------------------------------------------------------------------------------------------------------------------------------------------------------------------------------------------------------------------------------------|-----------------------------------------------------------------------------------------------------------------------------------------------------------------------------------------------------------------------------------------------------------------------------------------------------------------------------------------------|
| <p>다.·라. (생략)</p> <p>5. ~ 34. (생략)</p> <p>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생략)</p> <p>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u>항공기</u>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생략)</p> | <p><u>한정한다</u>)</p> <p>다.·라. (현행과 같음)</p> <p>5. ~ 3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 <del>----</del><u>항공기 및 수색·구조업무 또는 산불진화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국가기관등이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u>-----<br/> -----<br/> -----<br/> -----<br/> -----<br/> -----.</p> <p>③ (현행과 같음)</p> <p><b>부칙</b></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항공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임. 이에 반해 군용·경

찰용·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등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기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자체 항공기로 등록하여 운항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새로운 증명 절차를 받게 됨.

특히, 외국에서 제작한 군용기는 민간항공인증으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법 상의 형식증명이나 제작증명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는 등록<sup>1)</sup> 후 형식증명<sup>2)</sup>(설계인증)과 제작증명<sup>3)</sup>(제작과정인증)을 완료한

1) 「항공안전법」

**제7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항공안전법」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이하 생략)

3) 「항공안전법」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 감항증명<sup>4)</sup>을 거쳐야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데 비해,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① 방위사업청장이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형식인증)을 하거나 ② 현행법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형식인증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sup>5)</sup>

---

(이하 생략)

4)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인증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이하 생략)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형식인증 후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작증명 대신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생산확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을 거쳐야 운항이 가능하며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군용항공기 구매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sup>6)</sup>

### <현행 및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항공기 운항 가능 절차>

|                | 현행                                                                                          | 「군용기인증법」                                                                                                      |
|----------------|---------------------------------------------------------------------------------------------|---------------------------------------------------------------------------------------------------------------|
| 등록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등록                                                  | 별도 규정 없음                                                                                                      |
| 형식증명<br>(형식인증) |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                                                       | 1. 방위사업청장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의 신청<br>2. 「항공안전법」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 제작증명<br>(생산확인)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받으려는 자의 신청 | 방위사업청장의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의 신청                                                                                |
| 감항증명           |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 신청                              |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 신청                                                       |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삭제 <2012. 12. 18.>

|      | 현행 | 「군용기인증법」                                                |
|------|----|---------------------------------------------------------|
| 절차생략 | -  | 군용항공기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가능 |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에 대해 「군용기인증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림청이나 소방청 등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 및 군에서 장기간 운용하고 이전한 항공기를 현행보다 수월하게 등록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및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업무의 항공기에 「군용기인증법」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임.

「군용기인증법」 제2조에 따르면 군용항공기는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수출하기 위한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하고 감항성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는 바,<sup>7)</sup>

#### 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감항성을 인증받은 항공기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및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업무라는 민간 특수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소방청 등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후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및 산불의 진화 및 예방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국가기관등의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임.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국가기관등의 항공기를 소유 여부에 따라 「항공안전법」과 「군용기인증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자체 항공기와 임차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항공기가 특정한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임.

소방청은 수색·구조와 응급환자 후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방청의 동일한 항공기가 수색·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군용기인증법」 및 「항공안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군용기인증법」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8)</sup>

---

8)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1)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산림 항공기의 초도 인증을 「군용기인증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용 중인 항공기에 대한 지속 감항성 유지 검사·감독 수행 당국은 부재하여 항공기의 지속 안전성 확보가 우려됨.

또한,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소방·산림 항공기에 대해 특정 임무나 소유 형태에 따라 민·군 역할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우리나라는 ICAO 체약국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따르고 있어, 군·경찰·세관만 국가 항공기로 간주하고 소방·산림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항공우주산업

국가기관등항공기 중 수색구조, 산불진화 및 예방용으로 운용할 때는 국가항공기가 되어 「군용기인증법」 적용 대상이 되나, 응급환자 후송,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용으로 운용할 때는 민간항공기가 되는 바,

국가기관등이 항공기 한 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나의 항공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두 가지일 때 어느 법을 적용할지 매후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됨.

### 3) 국방부 의견

현행 군용항공기 최초 감항인증은 감항 주·전문기관에서, 지속감항은 각 군에서 수행 중으로 최초 감항인증 업무 수행에 제한 사항이 없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 협회 등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보완을 통해 「군용기인증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4) 소방청

2008년부터 소방 항공기가 항공안전법(항공법) 적용 대상이 되어, 긴급항공기 특성을 반영하여 운항 부분의 여러 가지 항공안전법 사항에 대한 적용 제외 특례는 유지하고 있으나, 감항이나 안전관리 등은 여전히 자율성이 없이 소방항공기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함.

소방청의 자체 노력으로 소방 항공기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향후 2027년 운영 예정인 소방청 119항공정비실을 중심으로 「항공안전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가 추진될 예정인 바,

소방항공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항공안전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운항, 정비, 기술 부문이 운영하고 「항공안전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과 감항의 자율성을 가질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 항공 고유 업무인 인명구조·구급 및 대형 재난 등에 현재보다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5) 산림청 의견

개정안은 산림항공기의 임무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 전환 항공기의 신속한 재난대응 전력화, 중복 인증 해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판단됨.

또한 경찰·세관 항공기와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보유 항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2.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제한형식증명 도입(안 제20조)

개정안은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되고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및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생략)<br>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br>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br>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1. 형식증명: 해당-----<br>----- 경우<br>2. 제한형식증명: 신청인이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제8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는 제외한다)-----<br>-----<br>-----<br>-----<br>----- 경우 |

| 현행                                                                                                                                                                                                                         | 개정안                                                                                                                                                                                                                                                                                                                                                                                                                                  |
|----------------------------------------------------------------------------------------------------------------------------------------------------------------------------------------------------------------------------|--------------------------------------------------------------------------------------------------------------------------------------------------------------------------------------------------------------------------------------------------------------------------------------------------------------------------------------------------------------------------------------------------------------------------------------|
| <p>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p> <p>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p> <p>③ ~ ⑦ (생략)</p> <p>&lt;신설&gt;</p> |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제시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sup>9)</sup>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sup>10)</sup>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p> <p>2.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p> |

| 현행 | 개정안                                                                                            |
|----|------------------------------------------------------------------------------------------------|
|    | <p><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u></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한 증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sup>11)</sup>을 하여야 하고,

###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입증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입증에 관한 법률」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11) 형식증명: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설계단계에서 기체구조, 착륙장치, 비행성능, 추진계통 등 설계특성이 항공기 기술기준(고시)에 적합함을 증명(대상: 우리나라에서 설계된 항공기)

①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 ②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되고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sup>12)</sup>을 하여야 함.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기를 소방청과 산림청이 자체 소유로 변경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형식증명, 감항증명 등을 받게 되어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절차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에 개정안은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되고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및 군용항공기로 20년 이상 운용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군용기인증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등이 군에서 장기간 운용한 항공기를 재난 대응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12) 제한형식증명: 항공기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나, 특정목적 운용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 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

다만, 「군용기인증법」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sup>13)</sup> 군용기의 감항성<sup>14)</sup>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전투, 특수임무 수행 등)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 정도일 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항공안전법」의 제한형식증명 조건은 ①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②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항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은 안전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의 취지는 군에서 장기간 운용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기를 소방청과 산림청이 관리 전환하여 소방청과 산림청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

1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가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기인증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제20조의 개정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1) 국토교통부

항공기 안전은 초도 인증부터 운영 중 지속 감항성 유지까지 전 주기를 하나의 당국이 같은 시스템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나, 개정안과 같이 초도 인증(제한형식증명)은 군, 지속 감항성 유지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것은 항공기 안전관리 원칙에 맞지 않음.

또한, 통상군은 임무 중심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민간은 모든 안전기준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하며, 「군용기인증법」에서는 민수에서 인증받은 것을 군이 인정하는 조항은 있으나, 반대로 군이 인증한 것을 민수에서 인정하는 역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아울러, 개정안대로 소방·산림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군용기인증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군의 인증을 민간 인증으로 간주하는 조문의 신설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2) 한국항공우주산업

현행법 제20조제2항제2호가목은 순수 민간업체에서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업무(씨앗파종, 농약살포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함.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항공기 중 수색·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용 항공기는 「군용기 인증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제20조제8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보임.

### 3) 국방부

개정안 제20조제8항 신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군용항공기의 감항당국은 방위사업청으로, 군용기 감항인증 관련 권한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음.

군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 감항당국의 감항인증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추가로 지정한 기관으로, 특정 항공기 개조 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 단독으로 적합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580 |
|--------------|

## 참고

##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 및 민·군 인증체계 비교

### 항공기 인증체계

• (항공기 인증) 설계-생산-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 1. 초도인증

태어나서 처음  
하늘을 날 때까지

##### ① 형식증명 (TC) (Type Certificate, TC)



제조사가 제출한 설계안이  
국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검증.

##### ② 제작증명 (PC) (Production Certificate, PC)



합격한 설계대로 항공기를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 ③ 감항증명 (AC) (Airworthiness Certificate, AC)



공장에서 막 출고된 '특정 한 대'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 2. 지속안전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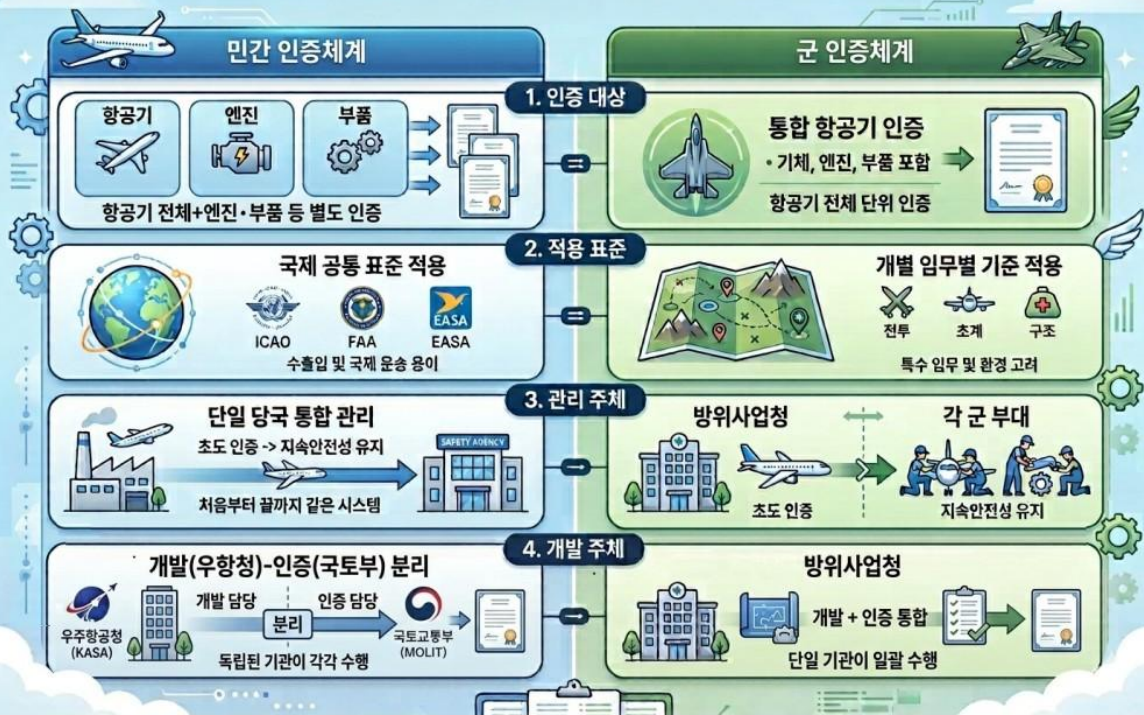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고장/결함  
데이터 수집

**감항성개선지시**  
자동차 리콜(Recall)과 유사  
결함 발견 시, 국가 기관에서 해결을 위한  
강제 정비 명령 발행(미 이행 시 비행불가).

### 민과 군의 인증체계 비교: 주요 차이점



※ 자료: 국토교통부